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학원 개요	학원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전화번호 :)	
인계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인수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변경사유			

「도로교통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 설명서 1부 2.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의 인계인수서 사본 1부 4.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수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자 모두의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